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

1. 관련

- 가.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(2022.3.11.)
-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2판(방대본-9435, 2022.3.12.)

- 2. 코로나19 대응지침의 사례정의 변경 및 신고·보고체계 개정에 따라,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의 대상환자 중 '확진환자'에 포함하여 적용하고,
-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수가의 대상환자를 불임과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립니다.

○ **적용시점** : 2022.3.14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

- 3.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**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으며***, 팩스로비드 등 처방을 위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(**처방전**)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“H/재택치료” 기재 (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)

* 기 안내(중수본-11783, 2022.3.12.) 「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 운영지침(2판)」 9p.

"※ (진찰료 등) 유증상자이면서 RAT 양성자를 확진환자로 신고하는 경우, 당일 발생한 진찰료 등 본인부담금은 국비지원대상임" 삭제 예정

- 붙임 1.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질의응답 1부
2. 코로나19 수가 대상환자 변경 안내 1부. 끝.

